

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안

1. 개정이유

「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」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유효기간 재설정(안 제1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안

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 중 “2022년 10월 31일”을 “2025년 10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의2(유효기간) 이 규정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)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<u>2022년 10월 31일</u>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	<p>제1조의2(유효기간)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5년 10월 31일</u> -----.</p>